

제42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5일(목)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1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1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1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7)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2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1)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0)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5)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3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3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3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3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4)
3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3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6)
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5150)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70)
 5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85)
 5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6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
 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6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7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7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0)
 7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3)

7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1)
7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9)
7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7)
7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0)
8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3)
8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4)
8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3)
8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8)
8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5)
85.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8)
8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03)
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12)
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01)
8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9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7)
9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8)
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4)
9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3)
9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9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9)
96.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66)
97.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6)
9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3)
9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8)
1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1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6)
 10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0)
 103.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7)
 1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6)
 10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4)
 1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6)
 1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0)
 1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5)
 10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5)
 1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1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1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1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1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4)
 1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4)
 11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5)
 1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120.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12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1)
 122.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성 외 50,22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6)
 123.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4.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5.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11
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11
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11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11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11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11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11
1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11
1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11
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11
1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11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7) 11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11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11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11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 11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11
2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12
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12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12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12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1) 12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0) 12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12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5)	12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12
3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3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12
3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12
3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12
3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37.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4)	12
3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12
3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6)	12
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12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12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12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12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12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13
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13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13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13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13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13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5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70)	13
5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85)	13
5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5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13
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13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13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13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13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13
6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13
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13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13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13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6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13
6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13
7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7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13
7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13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123.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1
124.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2
125.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2
7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0)	26
7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3)	26
7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1)	26

7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9)	26
7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7)	26
7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0)	26
8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3)	26
8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4)	26
8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3)	26
8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8)	26
8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5)	26
85.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8)	26
8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03)	26
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12)	26
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01)	26
8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27
9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7)	27
9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8)	27
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4)	27
9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3)	27
9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27
9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9)	27
96.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66)	27
97.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6)	27
9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3)	27
9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8)	27

1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27
1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36)	27
10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0)	27
103.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7)	27
1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56)	27
10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04)	27
1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76)	27
1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900)	27
1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5)	27
10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5)	27
1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27
1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27
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27
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27
11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27
1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28
1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4)	28
1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4)	28
11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5)	28
1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28
1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28
12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01)	28
122.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성 외 50,22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6) 28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소위에서 논의가 끝난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신규 법안에 대한 상정과 심사를 마치고 난 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중인 출석요구 등 국정감사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외 출장 관계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행사 참석 관계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 위원님 간 협의로 오늘 회의의 불출석을 허가하였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1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1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1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7)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2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939)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51)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60)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61)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55)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76)
3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3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3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3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64)
3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3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6)
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70)
5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85)
5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6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6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7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7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48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3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8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6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세희·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성민·박성훈·장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의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구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은석·김정호·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용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규제의 정의와 국가 및 지자체의 협조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윤준병·김성원·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11월 23일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와 관련한 규제를 4년 더 연장하고 정부는 규제의 효력 상실일 3개월 전까지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 신고 제도와 양수·상속·합병 시 승계제도 및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종합 보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부담을 고려하여 수주실적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사업자에 대한 출입조사 범위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로 구체화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절차,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을 위해 규정된 ‘인증’이라는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용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수리 규정을 삭제하여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상공회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사용하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특례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준용 표현 등을 통일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년·박상웅·이종배·박덕흠·이재관·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기술의 정의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추가 신설하고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등에 대해 후속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자가 도서·벽지 전력 공급에 사용하는 비용을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인선·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태준·이소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사업 및 탄소중립 관련 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가되는 사업을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에서 ‘탄소중립화에 기여하

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리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6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5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세희 의원, 김정호 의원, 송재봉 의원, 이재관 의원, 박성민 의원, 김한규 의원, 권칠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재봉 의원, 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재심의 청구 절차를 도입하고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상생협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 김성환 의원, 이종배 의원, 이정문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철민 의원, 오세희 의원, 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아 의원, 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6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과 제35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과 제39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10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3항과 제54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5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5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6항까지 이상 3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부터 69항까지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0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2항까지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3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유사·동일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박성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미지급자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취지를 살려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석을 하게 되면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감 증인 출석요구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의결을 위한 제반 서류 준비가 끝났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23항부터 제125항까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6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23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하여 총 6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획서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일정 중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조직법 개정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에너지 분야 일부 소관 업무가 다른 상임위원회로 변경될 수 있고 부처 이름이 변경될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만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국감 일정, 대상기관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는 재의결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의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과 송재봉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손을 드셨는데요, 서왕진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감사합니다.

증인 출석의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그거는 다음 안건……

○**서왕진 위원** 별개로 합니까?

○**위원장 이철규** 예.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거는 지금 계획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송재봉 위원** 저도 같은 거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4.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19분)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업무와 운영 전반을 보고하도록 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서류제출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정감사일 5일 전까지로 하겠으며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 서류제출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매번 이를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송달기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안내해 드린 일시까지 제출된 서류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절차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위원님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5.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시20분)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증인·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관증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61개 기관의 279인에 대해 각 기관별 국정감사일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기관의 공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게 되는 경우 새로 충원된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해당 기관의 증인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일반증인 15인과 참고인 12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출석요구일에 맞춰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시간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일반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구하시는 경우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감 일정, 대상기관 등과 관련한 국감계획서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변경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기관증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철회, 출석요구일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이후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의 있으신 분 말씀 주시지요.

우선 서왕진 위원님하고 송재봉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인가요?

○**김동아 위원** 저도 이의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다 하고 저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왕진 위원님하고 송재봉 위원님이 아까 먼저 말씀을 하시겠다 했으니까 서왕진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제분 이건영 회장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대한제분하고 세븐브로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그다음에 상표권 분쟁을 놓고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기업인 대한제분의 송인석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여러 가지 논의, 질의를 받은 결과 상당 부분을 수용하고 조정이 들어올 경우 원만하게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손해 검증 자료들을 보면 한 68억 원에 달하는 그런 근거들도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대한제분은 약속과 달리 올해 7월에 오히려 세븐브로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압박 등을 하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중소기업을 압박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감에서 했던 약속에 대한 이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상임위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대표이사 송인석이 아닌 실질적 오너인 이건영 회장을 출석시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확고하게 지난 국감에서의 약속 등의 이행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이번에 저도 국감 증인으로 이건영 대한제분 회장을 신청했는데 오늘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곳에 로비를 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송인석 대표가 출석을 해서 세븐브로이와 조정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또 세븐브로이 측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면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만이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중재와 협상이 있었고 또 공인회계사 등의 검증을 통해서 68억 원의 손배액이 결정됐습니다. 최소한 우리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조정하고 중재해서 금액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세븐브로이는 보니까 이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인해서 770만 켄을 폐기했고 180억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세븐브로이가 거부한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대한제분이 68억의 손배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역으로 소송을 거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국회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건영 회장을 출석시켜서 이러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의 행태에 대해서만큼은 꼭 좀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발언권을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터리 방열 장치와 관련된 기술 탈취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돼서 한화 솔루션 대표이사와 한화NxMD 대표이사, 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현재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남정운 증인 건만 반영이 돼 있고 장세영 NxMD 대표이사 건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기술 탈취 사례로 보이거든요, 물론 의혹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신기술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이 돼야 될 것이다, 만약에 하나의 건에 대해서 1인 증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참고인으로라도 해서 당일 날 그러한 여부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위원장님이 보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상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아 위원님, 두 분 발언 듣도록……

○**김동아 위원** 똑같은 의견이에요, 송재봉 위원님하고.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은 이재관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실 건데 안 하신다 이거지요?

○**김동아 위원** 송재봉 위원님하고 서왕진 위원님하고.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전기공급 현황 등에 대해서 산업계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에 많이 인상되었고 그 때문에 산업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전력산업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포함된 기업집단이 삼성그룹입니다. 이 삼성그룹의 전력소비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의견을 청취하려고 책임자를 누구로 선정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업 회장은 가능하면 부르지 말자고 해서 제가 부회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부회장을 신청했고 중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참고인으로 신청한 부회장마저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누구한테 들어야 되나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말씀 주시고요.

○**구자근 위원** 감사합니다.

증인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고 또 오늘 이 의사진행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고 방송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엄청난 굴욕적인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22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워딩과 또 지난 7월 31일부터 이 정부의 김용범 정책실장 포함해서, 대변인 포함해서 김정관 장관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과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를, 국민을 기망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불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혹시 이 건이 끝나면 중요한 현안이니까 김정관 장관으로부터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에너지, 지금 2차관 나와 계시는데 환노위로 가게 되면 한 20개 기관이 옮겨지게 되는데 지금 모든 기업들이나 밖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도 전기료를 죽어도 올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이야기를 했고…… 적어도 한 7~8차례 정도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들을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증인의 채택은 모든 위원님들이 신청은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증인을 다 채택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비교적 여야 간사님들, 두 분 간사님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 가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끼리 좀 더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 도저히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 또 참고인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우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리 법률안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률안 상정을 계속하겠습니다.

-
- 74. 고준위 방사성폐기物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690)
 - 7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3)
 - 7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1)
 - 7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9)
 - 7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7)
 - 7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0)
 - 8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943)
 - 8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604)
 - 8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3)
 - 8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8)
 - 8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5)
 - 85.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8)
 - 8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03)
 - 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12)
 - 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01)

8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9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7)
9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8)
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4)
9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3)
9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9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9)
96.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6)
97.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6)
9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3)
9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8)
1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1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6)
10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0)
103.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7)
1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6)
10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4)
1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6)
1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0)
1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5)
10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5)
1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1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1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1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1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4)
1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4)
11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5)
1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1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12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1)
122.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성 외 50,22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6)

(11시33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122항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허성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5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부지 분양제 도입입니다. 50여 년간 임대 중심으로 운영된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이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노후 시설 개선과 장기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현장은 오래전부터 분양제 전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산업부의 최근 연구용역에서도 자유무역지역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저는 자유무역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각계가 모여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해 부지 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부지 분양제 도입은 무분별한 매각이 아닙니다. 입주계약 의무와 처분 제한 등 투기 방지 장치를 두어 실수요 기업만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안정적 투자 기반을, 국가는 새로운 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제조업 기능에 데이터·AI를 결합해 자유무역지역을 혁신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

환은 곧 생존의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산업단지,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해아려 주시어 본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위원회는 현 구조상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리 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사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많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의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남 천안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보습학원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자료를 위원님들 단말기에 올려놨습니다.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감안해서 미리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의결 절차를 거친 후에 검토보고, 질의 및 대체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111항까지 이상 38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12항부터 121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22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 범위 확대,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지원 시 소요비용의 수취근거 마련 등 현행 기술이전·사업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설립·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현재까지 설립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신규 설립이 활성화되고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사업화 및 수익 증대로 인한 연구개발 재투자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소형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진흥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기존 원자력 관련 법률에서 담기 어려운 SMR 맞춤형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원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른 지원위원회 설

치, 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지원기금 설치 등과 관련해서 원자력진흥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 품목과 산업지구, 전문기업 등을 지정하여 금융·세제 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우선 선정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전후방산업 파급효과와 글로벌시장에서 선도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술적·산업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모빌리티 산업 일반과 관련해서 현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고 자동차·선박·드론 등 각 이동수단 유형별로 개별법이 시행 중이므로 유사한 지원제도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전문가 사설조사, 자료보존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소송제도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 수집이 어려우므로 미국, 유럽 등 특허 선진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의 정당한 가치 보장 및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서 특허청, 법무부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총 10건의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회부되어 있으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기존 화석연료 분야 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입니다.

동 청원을 통해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기존 화석연료산업 분야에 종사하였던 노동자들의 재생에너지산업 분야로의 고용 전환을 보장함으로써 화석에너지산업 축소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서 민간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제한되고 시장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청원과 유사한 취지로 사업 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기존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성소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위탁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액 입증을 위해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분쟁수단 마련을 위해 증거보전명령과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탁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기술 관련 분쟁 사건에서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용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 회복이라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다음 장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20% 이상을 정부가 각각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지방 취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인재 확보와 장기재직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산형성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적정성 또 국가 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향후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박성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의무투자 대상을 현행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벤처투자시장 참여자에 대한 투자규제 전반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유망기술기업의 스케일업에 대한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서 연도별 투자의무도 함께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연간 1회 이상 투자 여부만 확인하고 최소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 적극적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이 주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의 최소화된 가이드라인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황 조사와 안전보장 물품을 지

급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 1인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지원금과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경영 여건이 악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하에서 강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정책적 결정에 따른 예산사업 외에 별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비상계엄 이후의 매출액 감소 현황 등 전체적인 피해실태 파악을 토대로 재정 소요와 재원 마련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가급적 소위 위원님들은 소위의 법안심사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소위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꼭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허성무 위원님 한 분 손 드셨는데, 허성무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김정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취임 5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체코 원전 관련 웨스팅하우스 협약에 대하여 진상 파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또한 산업부의 진상 파악 후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장관 직속으로 관련 TF를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됐고 언제 마무리할 생각이며 대통령실에 중간보고를 포함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국정감사 중이라도 위원들에게 보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요청드리고요. 또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TF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정감사 일정 중에라도 TF 조사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결과가 최종 마무리는 안 됐는데요 적절한 시간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시간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붙여서, 아마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왔고 이것을 또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번에는, 두코바니 원전 계약 과정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여러 가지 협약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개가 되든 비공개가 되든 한번 보고받기로 했단 말이지요. 조금 전에 허성무 위원님의 질의와 대동소이한 건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데 이것이 국제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장관이 판단해서 알려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료 전체를 공개하고 왜 이런 계약이 체결되게 됐는지, 배경이 뭔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가 혹여라도 국익에 큰 침해가 있을까봐 우려했는데 TF팀에서 조사를 하고 어차피 알려질 거라면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에서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물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장님, 먼저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협약 내용 자체는 비공개 내용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만 있으면 국회 내 정보위처럼 상임위 내에 계신 분들하고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미 간에 원자력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가능하면 정보위에서 하는 것처럼 비공개로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공개해도 괜찮겠다 싶은 내용도 있고 이것은 공개해서는 곤란한 내용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왕 자리를 한다면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답변드리는 데 좀 제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논쟁을 하고 또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한 지금은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정파적 이익 때문에 국가의 큰 이익이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장관께,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장관이잖아요.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장관께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장관은 감독권이 있으시잖아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최근에 대두돼 가지고 위원장인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에 접근해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해요, 사실은 궁금해 가지고,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한 수원이, 팀코리아가 나라를 팔아먹은 집단처럼 이렇게 매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 대한민국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그런 계약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싶은데 알려 주지는 않아요. 다만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면 전부 다 공개를 하겠다고 할 수밖에 더 있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정부에다가 기회를 드립니다. 장관께서 보고를 받고 동의를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자, 또 시시비비를 가려 주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끝났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중에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한미 관세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장관께 3500억 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이 4100억 불 조금 넘는데 3500억 불을 현금으로 편당하기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 경제위기가 오고 바로 IMF를 넘어서는 외환위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고 장관께서는 그 3500억 불이 첫 번째, 현금으로 가는 건 일부고 상당 부분은 대출, 보증이라든가 융자 이런 것으로 현지에서 조달한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 답변은 지금도 명확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것은 국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을 잠재워 드리려고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금의 운용 결정, 결정권도 당연히 돈을 투자하는 쪽이, 리스크를 안는 쪽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같이,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 이철규** 협의를 하되, 그때 분야가 있었잖아요. 몇 가지, 5개인가 6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협의가 되는 데 우리가 동의를 최소한…… 우리가 여기다 한다 하고 일방 결정은 못 한다 하더라도 운용하는 협의체가 할 때, 우리가 동의를 할 때 투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최초의 한미 관세협상을 할 때 협정 내용이 명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협상이 계속 이렇게 진화라면 진화고 바뀐다고 보면 바뀌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처음에 3500억 불의 구성이 투자와 대출과 보증이 같이 가 있고 그리고 운용 과정에서 협의위원회,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 이렇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이유도 이런 부분들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접점을 찾아 가는 과정에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명확하게 그렇게 협상했다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국내 언론이 성공한 협상이었다, 그런데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이게 추인이 되지 않았지요. 협정문 서명을 못 했습니다. 못 한 것은 이견이 있어서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명확하게 이견이 있었던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정책실장을 중인 신청을 하자고 아침에 논쟁이 있었던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신 정책실장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성공적인 회담이었는데 합의문이 뭐 하는 데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아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실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3500억 불을 현금으로 편당한다면 그다음에 어떤 후폭풍이 오겠느냐. 그렇다면 당시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국민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오늘 국회에서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장관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렇게 주문하고요. 더 이상 여기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구하고요.

서왕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서왕진 위원** 방금 앞에 웨스팅하우스 계약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논의됐고 사실상 합의되었던 것은 상임위의 의사에 따라서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 다만 그때 한미 관세협상 등의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좀 유보를 하자라고 사실은 그렇게 결의가 됐는데……

○**위원장 이철규**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님,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서왕진 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좀, 아까 말씀은 정부한테 다시 또 뭔가 선택을 물어보신 거 같아서……

○**위원장 이철규** 아니, 정부가 보고를 받고 정확하게 보고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원문을 공개할 건지, 이것을 정부가 책임 있게 증인선서를 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건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 어쨌든……

○**위원장 이철규**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김정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9월 21일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작년, 24년 6월 3일에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무려 거의 2200조가 묻혀 있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산유국의 꿈에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에 나타났던 결과는 일주일 뒤에, 6월 10일이지요. 국민권익위에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쇼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가의 자원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업정책이라든가 또는 자원과 관련된 그런 중대한 결정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정부에서도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김정관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이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 이런 내용들이 자원 부국을 위한 우리의 긴 여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에 따라서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7광구 있지요. 제가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사실은 한일 협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외교부의 일로 보통 간주가 됩니다마는 산업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외교부랑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장관님, 다시 한 번 더 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철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이터하고 BBC하고 인터뷰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3500억 불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장관님의 생각, 장관님이 추진했던 그런 협상 일정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미국이 처음에 합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구자근 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현금으로 요청했다 이 말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자근 위원** 미국은 처음부터 90%는 수익이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고, 미국에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펀드의 구성 자체는 투자와 대출과 대출 보증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 여기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 과정에서 그게 내용이 바뀌면서 지난번에……

○**구자근 위원** 그러면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대통령께서 분명히 미국에서 요구한 현금으로 전액 인출을 해서 간다면 IMF와 탄핵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시점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8월 초 정도 됩니다. 이제 협상을 마무리 짓고 구체적으로 문서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 내용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정상회담에서도……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책실장, 대변인, 장관, 대통령, 다 이야기가 다르니까 ‘충정로 대통령 따로, 용산 대통령 따로, 여의도 대통령 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협상 결렬도 불사하겠다라는 것은 장관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협상 결렬이라는 말은 제가 잘.....

○**구자근 위원** 아니, 여당 내에서 협상 결렬도 불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무선에서는 빠른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당 내에서 협상 결렬도 불사해야 되겠다라는 많은 언론 보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는 협상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협상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익 그리고 외교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간에 지금은 이런 과정들이 서로 협상하다 보면..... 트럼프 방식이라는 게 한 1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요구하는 협상의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국익에 맞게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구자근 위원** 장관님, 소신을 지켜 주시고..... 지금 여러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이중, 삼중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우리 기업들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한도 없으니까,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장관님, 오로지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조금 전에 웨스팅하우스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하시는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오해도 좀 풀어 드릴 것도 있고 같이 상의하면서 말씀도 경청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데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부풀려 놓고 상임위원한테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철규** 그만..... 알겠습니다. 그만요.

강승규 위원님, 조금만요. 지금 자꾸 이렇게 하시면.....

○**김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잠시만요.

○**김정호 위원** 사회를 왜 자꾸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십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독단적이 아니고..... 김정호 위원님,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위원님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계시다가.....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하면 끝이 안 납니다.

○**김정호 위원** 발언하러 왔으면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장관님, 여기서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합니다. 하고, 환노위에서 체코 원전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의결을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의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소관 업무가…… 부처끼리 잘 협상을 하세요, 부처끼리.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왜 위원장님만 이야기를 하고 위원들은 못하게 합니까?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계속해서……

○김정호 위원 이철규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세요?

○위원장 이철규 편파적이 아니라 위원회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호 위원 자기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위원장 이철규 이게 내 개인의 얘기입니까?

○김정호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개인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국민을……

○위원장 이철규 이보세요! 김정호 위원님, 초선도 아니고 삼선씩이나 되셔 가지고 왜 그래요, 자꾸만! 위원장 하실 분이.

○김정호 위원 이철규 위원장님은 왜 그러세요?

○위원장 이철규 환노위가, 원전 수출 업무가……

○김정호 위원 환노위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구자근 위원 아니,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이철규 우리 위원회의 이익이 걸린,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걸린 문제예요. 좀 알고 말씀을 하세요.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발언 기회를 주세요!

○구자근 위원 아까 마쳤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장관님,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세요.

○김정호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마친 거지 어떻게 그게……

○강승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퇴장 제도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퇴장 제도 없어요?

○위원장 이철규 가만히 계세요.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하세요.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원전 수출 업무가 산업부에 남아 있습니까, 환경부로 넘어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원전 수출은 현재 정부조직법에서 여기 우리 상임위…… 산업부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더라도 산업부에 남아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남아 있는데 원전 수출과 관련된 계약서라든가 이것을 환노위가 의결해 가지고 공개한다면 이 산자위는, 산업부장관님이나 우리는 투명인간이 돼 버리고 여기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관 업무도 못 지키는 장관, 소관 업무도 못 지키는 위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부 부처 내에서 먼저 조율해 가지고 이것을…… 더더구나 환경부장관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었어요.

○**김정호 위원** 이철규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기회를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김정호 위원**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협의할 겁니까, 부처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업무가 양쪽에 이렇게 쌍발이 쪘 가지고 제대로 통제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김정호 위원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세요.

○**김정호 위원**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아까 서왕진 위원 발언이 있었고 뒤에 장관께서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지난번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부터 계속 이 건 관련해서는 적어도 비공개 열람 정도는 해야 된다, 누차 이야기가 있었고 한수원이나 장관도 전체회의의 의결로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미루어 왔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나왔고 장관도 ‘비공개 열람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해도 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굳이 타 상임위 관련해서는 못하게 하고 우리마저도 소관 상임위에서 죽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사코 막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철규** 막았어요?

○**김정호 위원** 그것을요……

○**위원장 이철규** 왜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얘기하세요?

○**김정호 위원** 왜곡이…… 뭐가 왜곡입니까?

○**위원장 이철규**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민에게 공개하자고.

○**김정호 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어떻게 사람들이 아래요, 그러면 안 돼요.

○**김정호 위원** 누가 사람입니까, 지금?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사람답게 하세요.

○**위원장 이철규** 뭐예요?

○**구자근 위원** 뭔 소리 하십니까?

○**김정호 위원** 뭔 소리기는요.

○**구자근 위원** 사람답게라니!

○**위원장 이철규** 사람답게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데……

○**구자근 위원** 아니, 사람답게라니!

○**김정호 위원** 왜곡하는 게 누구입니까?

○**구자근 위원** 뭔 왜곡을 해!

○**김정호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원전 수출이 환노위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철규**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비공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철규 비공개를 공개하려 그래요, 공개! 자꾸 왜곡시키니까 공개합시다.
- 구자근 위원 하려고 그려는 것을 환노위에서 갖고 간다고 안 그럽니까!
- 김정호 위원 여기서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어요. 2분 주세요.
- 위원장 이철규 그만하세요.
- 강승규 위원 아니, 주세요.
-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그만……
- 김정호 위원 해당 상임위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요.
- 구자근 위원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 김정호 위원 뭐라고요?
- 구자근 위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해당 상임위가 못 해서 거기로 갖고 간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환노위로 가셔서, 회의 가셔서 다 공개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이철규 위원장님이 미뤄 온 것 아니에요!
- 구자근 위원 뭘 미뤄?
- 김정호 위원 안 미뤘어요, 그러면?
-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여기 추미애 위원장처럼 할까요?
- 김정호 위원 말이…… 뭐라고요?
- 위원장 이철규 추미애 위원장처럼 할까요?
- 김정호 위원 하려면 하세요.
- 위원장 이철규 잘못된 것은 아시잖아요.
- 김정호 위원 뭘 잘못된 것을 알아요?
- 위원장 이철규 공개하자는 겁니다. 공개를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공개로 인해서 후폭풍이 생겼을 때 공개하자는 측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국민적 비난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위원장은 야당이지만 정치적 이익 때문에 마구잡이로 국익에 손해되는 일을 하자고 부추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그만 자제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있나요?

서면질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에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5인)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신현승	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서일준	10. 13.(월) 산업통상자원부	
이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장	곽상언		
박대준	쿠팡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웅	10. 14.(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김기호	(주)아성다이소 대표	허종식		
조만호	무신사 대표	송재봉 정진욱·김종민	10. 14.(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이주철	W컨셉 대표			
김범석	(주)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정진욱·김종민	10. 17.(금) 한국전력공사 등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박지혜		
신원근	진학사 CEO	10. 24.(금)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수진	야놀자 대표			오세희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박지혜	10. 29.(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정용진	신세계 회장	김성원		
이형수	삼척블루파워 사장	서왕진	10. 13.(월) 산업통상자원부	
강이구	코오롱베니트(주) 대표이사	정진욱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이재관	10. 14.(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종합감사	

참고인(12인)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오세희	10. 13.(월) 산업통상자원부	
김철승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			
박근수	(주)그린녹색에너지 대표	정진욱 구자근	10. 14.(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구자근	10. 17.(금) 한국전력공사 등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이한우	한국수소산업협회 이사	박형수	10. 14.(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나영우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	서일준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	구자근	10. 17.(금)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구자근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한국전력공사 등	
한지형	오토노마스에이투지 대표	정진욱	10. 24.(금)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감사	

○출석 위원(27인)

강승규 곽상언 구자근 권향엽 김동아 김성원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박상웅 박성민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정동만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첨가 위원(2인)

김성환 전재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제2차관 이호현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산업기반실장 오승철

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무역투자실장 박정성

정책기획관 안창용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에너지정책관 조익노

전력정책관 최연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적합성정책국장 전용길

기술규제대응국장 서영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 김우중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귀현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관 김우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

【보고사항】

○의안 회부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2)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3)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5)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1)
- 이상 6건 9월 8일 회부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0)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3)

이상 4건 9월 9일 회부됨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9. 9.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1)

9월 10일 회부됨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7)

이상 2건 9월 12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이상 2건 9월 15일 회부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3)

9월 17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3)

이상 4건 9월 18일 회부됨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9. 1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5)

9월 19일 회부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5)

9월 22일 회부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4)

9월 23일 회부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9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9. 5.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2025. 9.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이상 2건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5)

이상 2건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9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16.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4)

이상 3건 9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9)

9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9. 23.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0)

9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53	39	24	4	285
중소벤처기업부	25	14	30	4	79
특허청	4	12	16	3	37

○요청서 제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요청의 건

(2025. 9.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